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07. 4.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제출시한을 명확히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판단을 의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여부 판단을 의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문구를 삽입 하고자 함.<제19조제2항>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63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19조 ②항 중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을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수정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비고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위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개정안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할 의안은 회기 개시 7일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다만, 의장이 판단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항 단서수정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제출) 의원

서명날인부

성명	서명(날인)	비고
김익수	김익수	
박순이	박순이	
유진석	유진석	
이강민	이강민	
안호구	안호구	
김영호	김영호	
유서규	유서규	
권복	권복	
이재일	이재일	